##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87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이언주 · 민병덕 · 박홍배

김병주 • 이재관 • 이광희

오세희 • 정진욱 • 박지혜

김동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없음.

회사의 이사들이 그들을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하여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이는 주주 각자는 출자한 몫에 따라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주주 평등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주주 평등원칙은 사유재산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임.

이에 따라 동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 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 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 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법률 제 호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 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
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	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
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라 주주와 회사를 위하여 그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u>한다.</u>